

발간등록번호  
978-89-8483-240-4



2015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 2015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02 • 2100 • 3399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053 • 230 • 1114  
<http://www.nia.or.kr>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 02 • 6191 • 2063  
<http://www.odmc.or.kr>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www.odmc.or.kr](http://www.odmc.or.kr)

2015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2015년 12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해영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어느덧 시행 3년차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다방면에서 힘써주신 결과, 이제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인식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짐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분쟁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4년에 17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데 반해 2015년에는 22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하여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분쟁조정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전 조정 및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에는 94건이었던 사전 조정 및 상담사건 수가 2015년에는 163건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2015년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을 총 13회 실시

하여 900여명의 담당자들에게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분쟁 예방에 더욱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의 수는 2014년 326건에서 2015년 75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부사례를 분석하여 본 결과 대부분은 정당한 거부사유로 거부결정을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당한 거부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2014년 분쟁조정사례집 발간에 이어서, 그동안 접수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사례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내용과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에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을 정리한 2015년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잠재적인 데이터 이용자들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간 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신 1기 조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이용권 구제에 앞장섬으로써 데이터 개방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contents

## 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10 1. 설립목적 및 근거
- 11 2. 위원회 구성
- 12 3.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II.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조정 현황

- 16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신청 현황
- 17 2.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현황
- 32 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상담
- 33 4. 조정 현황

## I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상담 사례

- 38 1.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 사례
- 53 2. 분쟁조정절차 관련 상담 사례
- 55 3. 기타 상담 사례

## IV.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 1. 조정 성립 사례

- 60 조정 성립이란?
- 61 (사건번호 2014-01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 65 (사건번호 2014-015)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 69 (사건번호 2014-01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 74 (사건번호 2015-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
- 77 (사건번호 2015-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사건
- 82 (사건번호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 월간자료 사건
- 86 (사건번호 2015-015)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 기출문제 사건
- 89 (사건번호 2015-018) 서울시 관광정보 콘텐츠 사건

### 2. 조정 불성립 사례

- 93 조정 불성립이란?
- 94 (사건번호 2015-002,009) 대법원 경매데이터 사건
- 100 (사건번호 2015-007) 경찰청 범죄발생위치 및 시기 데이터 사건

### 3. 조정 거부 사례

- 105 조정 거부란?
- 106 (사건번호 2014-017)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 사건
- 107 (사건번호 2015-017) 국세청 서울 시내 면세판매장정보 사건

### 4. 조정 취하 사례

- 108 조정 취하란?
- 109 (사건번호 2015-011)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사건
- 113 (사건번호 2015-014) 법무부 외국인등록전산정보 사건
- 114 (사건번호 2015-019)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정보 사건

### 5. 조정 전 합의 사례

- 115 조정 전 합의란?
- 116 (사건번호 2015-003,004) 농촌진흥청 발간물 사건
- 118 (사건번호 2015-005,006) 농촌진흥청 발간물 사건
- 120 (사건번호 2015-00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간물 사건
- 125 (사건번호 2015-01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사건
- 127 (사건번호 2015-0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 6. 조정 반려 결정

- 129 반려 결정이란?



# I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표목차

- 16 [표 1]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17 [표 2]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현황
- 18 [표 3] 기관유형별 거부결정 건수 비교
- 18 [표 4] 중앙부처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19 [표 5] 중앙부처별 저작물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0 [표 6] 지방자치단체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0 [표 7] 지방자치단체별 저작물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1 [표 8] 공공기관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1 [표 9] 공공기관별 저작물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2 [표 10] 데이터 유형별 거부결정 연도별 비교
- 23 [표 11] 거부결정 사유 유형 연도별 비교
- 24 [표 12] 분야별 데이터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24 [표 13] 분야별 데이터 저작물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32 [표 14]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상담 연도별 현황
- 33 [표 15]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조정 결정 종류
- 34 [표 16] 분쟁 조정 결정 연도별 비교
- 35 [표 17] 2014년 분야별 조정 현황
- 35 [표 18] 2015년 분야별 조정 현황

### 그림목차

- 11 [그림 1]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12 [그림 2]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01 설립목적 및 근거
- 02 위원회 구성
- 03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01

설립목적 및 근거

## 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 설립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2013년 10월 발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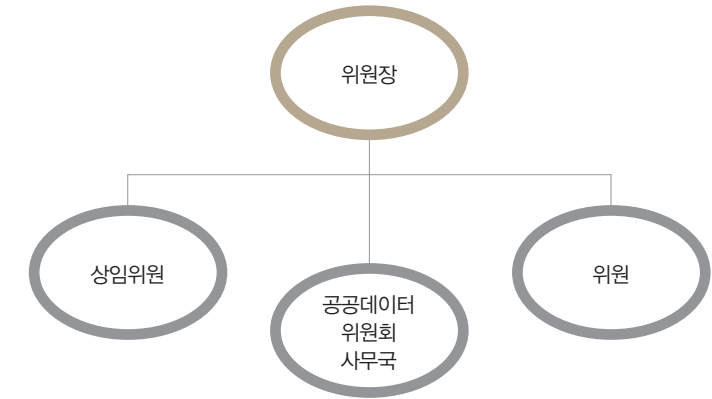
### ◆ 설립목적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국민의 데이터이용권리 구제
- 전문적·현장 친화적 행정 구제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가능성 제고
-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과 국민의 정보권익 실현

# 02

위원회 구성

[그림 1]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교수급 이상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조정위원은 2년 임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공공데이터 위원회 사무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 설치·운영
  -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 분쟁조정 제도 홍보, 교육, 상담
  -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

[그림 2]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에 근거

# 03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1 신청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
-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인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 홈페이지(www.odmc.or.kr), 전자우편(odmc@nia.or.kr), FAX(02-6191-2193), 우편·방문 접수
- ※ 조정신청 접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 2 신청사실 통보

신청사건 접수 시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 3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건담당자가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건 회부

### 4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전에 당사자 간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 권고
- 당사자 간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 5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중한 사건인 경우 조정부 회의 개최
- 신청인·피신청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 6 조정의 성립

- 신청인·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 성립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거부 간주

### 7 효력의 발생

양 당사자의 조정결정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II

---

##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조정 현황

---

0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신청 현황

0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현황

0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상담

04 조정 현황



## II. 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조정 현황

# 01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신청 현황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2015년 현재(11.30.기준) 15,894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개방 데이터 중 파일데이터는 2015년에는 13,938개로 2014년의 11,796개에 비해 그 수가 1.18배 증가하였고, 오픈API는 2015년에 1,956개로 2014년의 1,612개에 비해 그 수가 1.21배 증가한 바, 해마다 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신청 수를 보더라도 2013년 13,923건, 2014년 139,397건, 2015년(~11.30) 570,893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의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법률이 시행 된 이후부터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이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구분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11.30)	
		등록	삭제	누적결산 ('13년말)	등록	삭제	누적결산 ('14년말)	등록	삭제
파일데이터	13,938개	4,790	283	4,718	7,185	244	11,796	2,532	42
오픈API	1,956개	590	181	554	1,147	117	1,612	518	1
합계	15,894개	5,380	464	5,272	8,332	361	13,408	3,050	43

※ 총계는 전체 등록 건수에서 전체 삭제 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표 2]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1월	2월	3월	4월	소계	총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오픈API	1,650	2,602	9,815	23,872	3,126	2,075	2,629	3,266	3,843		3,847	3,522	3,449	36,859
데이터	337	2,020	4,108	115,525	41,211	32,135	51,612	50,937	546,993	668,983				
					56,894	47,964	53,500	40,633						
					47,771	54,335	69,981							
소계	1,987	4,622	13,923	139,397	44,337	34,210	54,241	54,203	570,893	730,822				
					60,737	51,811	57,022	44,082						
					51,111	54,793	64,346							

# 02

###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현황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공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제공 또는 거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외의 데이터에 대해 제공 신청을 한 건은 11,314건이며 그 중 1,090건에 대해 제공 거부결정이 있었고, 2015년에는 총 758건으로 2013년부터 2014년 기간의 332건에 비해 그 수가 2.2배 증가했다. 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거부사례들을 분석하여 올바른 공공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왔다.

아래에서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사례들을 기관유형별(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거부사유별, 데이터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요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서술의 편의 상 2013.11.01.~2014.12.31.은 "2014년"으로 표기하고, 2015.01.01.~2015.11.30.은 "2015년"으로 표기한다.

### 가. 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표 3] 기관유형별 거부결정 건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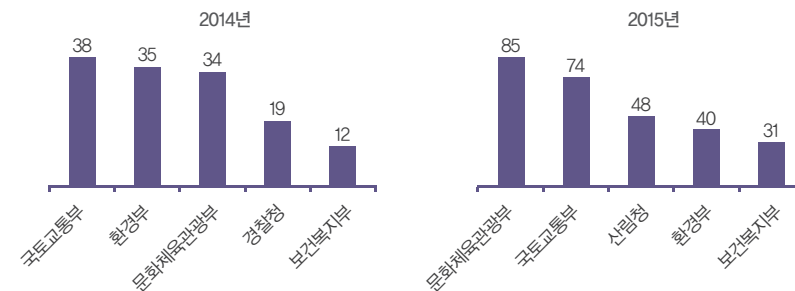
구분	제공 거부건수	연도별		
		2013	2014	2015
중앙부처	676	4	186	486
지자체	234	1	59	174
공공기관	162	1	79	82
국가기관	18	0	2	16
계	1090	6	326	758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2013.10.31.) 부터 2015.11.30.까지 총 1,090 건의 거부 결정(단순 발간물 701건 포함)이 있었는데,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부처(국가기관 포함)가 전체 거부결정 수의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가 개방에 소극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2014년, 2015년의 거부결정 수의 증감 여부를 비교하여 어떠한 부처의 데이터를 국민들이 많이 요구 하였는지, 해마다 그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중앙부처별 비교 분석

〈2014년, 2015년 비교(전체)〉

[표 4] 중앙부처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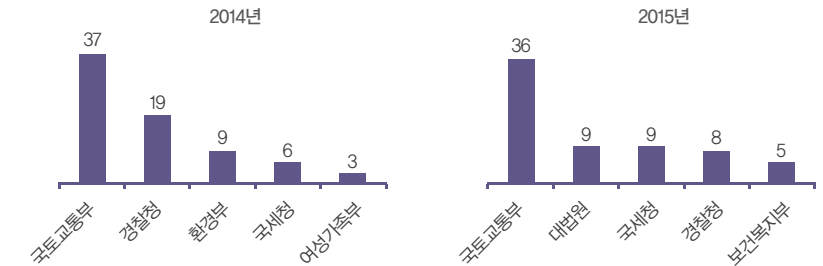


※ 상위 5개 중앙부처(국가기관 포함)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한 상위 5개 부처를 2014년, 2015년으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였고,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부결정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저작물인 공공데이터(단순 발간물)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부처들에 비해 저작물인 공공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2015년 비교(저작물 제외)〉

[표 5] 중앙부처별 저작물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 상위 5개 중앙부처(국가기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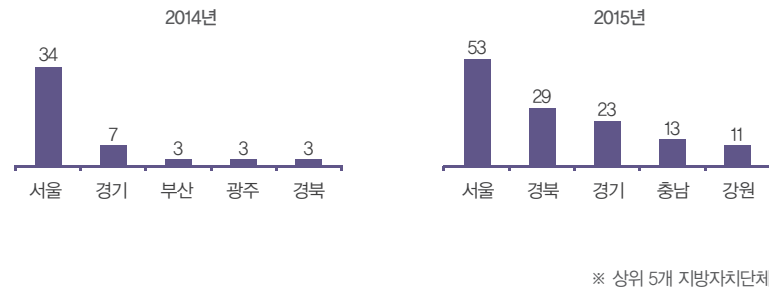
그러나 저작물을 제외한 거부결정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거부 결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는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위 5개 부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경찰청, 국세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타 부처들에 비해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고 있는 부처인바, 이는 부동산, 교통 등과 관련 된 데이터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관련법령 및 업무지침 등 다양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개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경찰청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다는 등의 거부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 법령에서 개방에 저해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문제는 다각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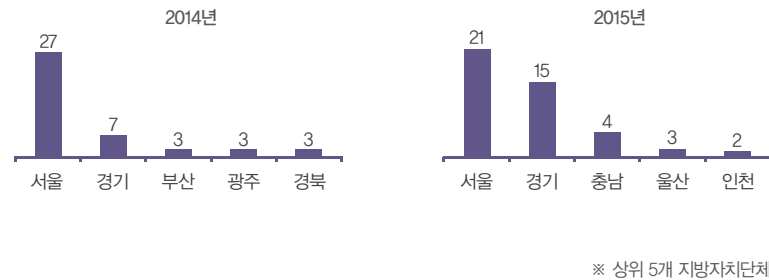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비교(전체)〉

[표 6] 지방자치단체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2014년, 2015년 비교(저작권 제외)〉

[표 7] 지방자치단체별 저작권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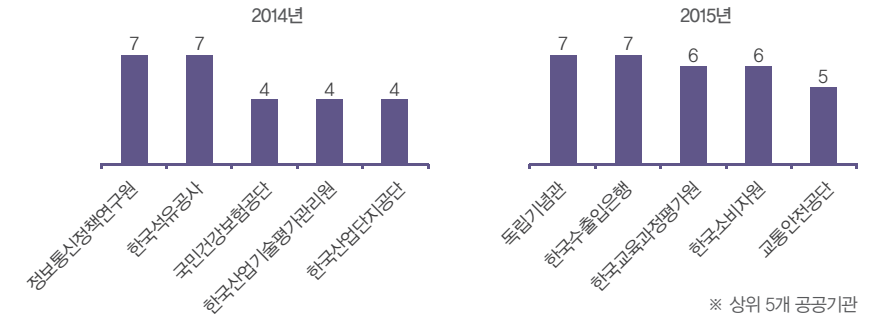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총 1,090건의 거부결정 중 234건(21%)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비교 분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가 2014년, 2015년 저작권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 고가치, 고수요의 정보가 서울시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필요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꾸준한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더욱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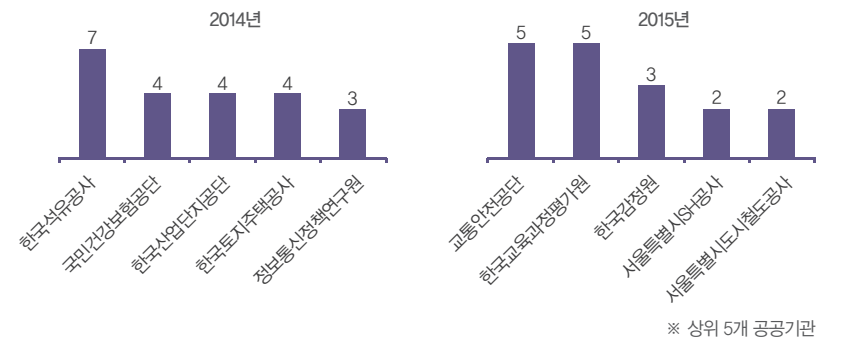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비교(전체)〉

[표 8] 공공기관별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2014년, 2015년 비교(저작권 제외)〉

[표 9] 공공기관별 저작권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전체 거부결정 중 162건(15%)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기관이 10건 미만의 거부결정을 하였으며, 저작권을 포함한 거부결정 수를 보면 정책 연구보고서를 많이 생성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독립기념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거부결정 수가 많고, 저작권을 제외한 데이터를 보면 거부 결정을 한 상위 5개 부처가 교통, 부동산 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의 거부결정 수가 많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대, 특히 교통물류,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 국민 수요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집중 개방 교육 및 홍보, 품질 정비 등의 실무적인 협조가 긴밀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나. 데이터 유형 및 거부 사유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분석

### 데이터 유형별 비교 분석

[표 10] 데이터 유형별 거부결정 연도별 비교

구분	2014년	2015년	계
저작물	132	569	701
정보 DB	200	189	389
계	332	758	1,090

거부결정의 데이터 유형을 크게 저작물과 정보DB 2가지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4년에는 저작물이 132건, 정보DB는 200건으로 정보DB의 거부결정이 조금 더 많았는데 2015년에는 저작물이 569건, 정보DB가 189건으로 저작물의 거부결정이 정보DB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및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출판하여 영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거부결정 1,090건 중에서도 저작물이 701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순 발간물로 연구보고서, 홍보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고 제3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들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 외 정보DB의 경우에도 2014년에 비해 거부결정의 수가 증가한 바,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거부사유별 비교 분석

[표 11] 거부결정 사유 유형 연도별 비교

구분	2014년	2015년	계
제3자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금지	126	487	613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40	71	111
제공기관 오인 및 데이터 미보유	71	96	167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가공의무 부존재	15	45	60
기타	80	59	139
총계	332	758	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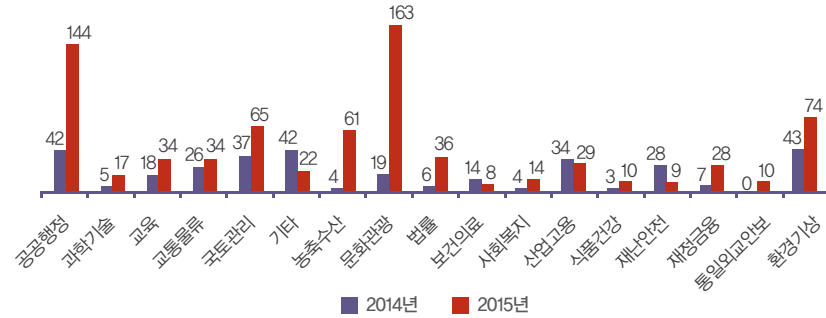
거부결정 사유를 “①제3자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금지, ②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③제공기관 오인 및 데이터 미보유, ④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가공의무 부존재, ⑤기타”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니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거부결정의 수는 더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①제3자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금지”를 사유로 한 거부결정이 2014년 126건에 비해 2015년에는 487건으로 약 3배 넘게 그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거부결정이 많은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③제공기관 오인 및 데이터 미보유”를 이유로 거부결정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국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에 “②비공개 대상 정보”를 이유로 거부결정을 한 경우, “④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가공의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결정을 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부당한 거부결정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다. 분야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 분야별 거부결정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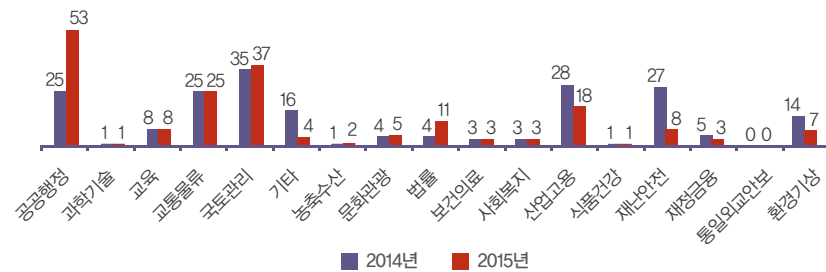
〈분야별 데이터 거부결정(전체)〉

[표 12] 분야별 데이터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분야별 데이터 거부결정(저작권 제외)〉

[표 13] 분야별 데이터 저작권 제외 거부결정 수 연도별 비교



전체 1,090건의 거부결정을 17개의 분야로 나누어 비교분석해본 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공공행정, 문화관광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거부결정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단순 발간물)을 제외하여 보니 오히려 교통물류, 국토관리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거부결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비교 분석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라고 유추할 수 있는 만큼 개방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방의 막힌 흐름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전 유의사항

공공데이터법이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인 만큼 제공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부당한 거부결정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바,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거부사유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① 제3자 저작권의 침해 및 영리적 사용 금지

저작권인 공공데이터의 경우 국민 수요가 많은 만큼 거부결정의 수와 상담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이다.

특히 저작물의 경우 제공기관들이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제공결정을 해주었다가 중단결정으로 반복하거나 제공거부결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공기관이나 이용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제공기관에서 조금 더 신중히 저작권 관계를 검토해본 후 제공여부를 결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거부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제3자의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로만 거부결정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 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 !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전 점검 사항

####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

- 기관의 업무로 그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 ☞ 업무상 저작물-저작권자 : 해당 기관(저작권, 저작인격권 모두 기관이 보유)
- 기관이 제3자(연구기관, 타 공공기관 등)와 함께 작성하였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
  - ☞ 우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당 저작물의 용역계약서 등 검토)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은 경우
    - 저작권자 : 해당 기관
    - 저작인격권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양도받은 경우
    - 저작권자 : 해당기관(단,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 저작인격권자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만을 갖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저작권자, 저작인격권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 둘째 저작권 관계 파악 결과 저작권을 기관이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기관이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전부 양도받았는지 정당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도록 노력
  - ☞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았거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한 경우
    -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가능
    - 제공 결정을 할 경우 출처 표시 등 이용조건 명확히 하여야 함 (Ⅲ.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사례 Q1-11, 48p 참고)

☞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저작물에서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는 부분만 기술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분리 제공이 가능할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부분만 분리하여 부분 제공하여야 하고, 분리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가능
- 신청인이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가능

• 기관이 타 공공기관 등이나 민간 업체(개인)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Ⅲ.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사례 Q1-10, 47p 참고)

#### 셋째 저작권 관계 파악 결과 저작권을 기관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해주어야 하며,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 이용 금지”라는 이용 조건을 부과하여 제공결정을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정이므로 사실상 제공거부결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부당한 결정임

• 기관은 제공결정을 할 때에 정당한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Ⅲ.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사례 Q1-5, 42p 참고)

1.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1차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된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5조 참조)

2.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해당함.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할 경우 이를 특약으로 정해야 함

3.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됨(각 권리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 또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저작권법** <참고 법령>

①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 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제공토록 하고, 무조건적으로 거부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전 점검 사항

-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것
-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로 판단한 근거(법령 등)를 거부사유 작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둘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해당 데이터에서 기술적으로 분리가능한지 검토
- 분리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부분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제공기관 오인 및 미보유

신청을 받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거나, 데이터에 대해 제공 권한이 없는 경우 '제공기관 오인 및 미보유'를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데, 단순히 제공기관이 아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여 거부결정을 하기 보다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전 점검 사항

**첫째** 신청 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소유 여부와 처분 권한에 대한 확인

**둘째** 해당 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자료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정확한 데이터 관리·보유 기관을 안내할 것

4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가공의무 부존재

신청인이 요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줄 의무는 없으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분리등 비용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정도라면 가공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전 점검 사항

**첫째**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지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

**둘째**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 및 취합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 및 취합하여 제공



# 03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상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표 14]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상담 연도별 현황

연도	연도별 총 상담 건수	상담 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상담내용 내)		상담대상자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상담	분쟁조정 절차관련 상담	기타상담	저작권 관련 상담	정보DB 관련 상담	기관	민간
2014년	94건	77	6	11	61	16	68	26
2015년	163건	143	7	13	124	19	147	16
총 계	257건	220	13	24	185	35	215	42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2015.11.30.까지 총 257건의 상담이 접수 되었으며, 이를 연도별, 상담내용별,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저작권/정보DB), 상담대상자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그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 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들이 이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의 담당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관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담당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제공 관련 상담의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청구와의 구별, 손해배상문제 등이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상담은 비중이 크지 않다.

# 04

## 조정 현황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결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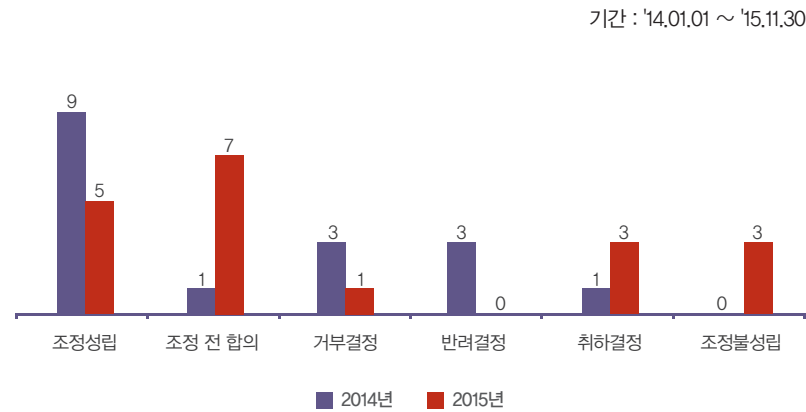
[표 15]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조정 결정 종류

구분	세부 구분	내용
조정절차 종료	반려 결정	-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부 결정	- 법령상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신청 취하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위원장이 사건 종결 - 취하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녹취하여 음성 파일로 보관해야 함
	조정 전 합의	- 「공공데이터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양 당사자가 조정부 회의 전에 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할 경우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 조정 전 합의는 조정부 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이고,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사전조정임
조정 성립	조정 결정 수락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이 경우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조정 불성립	조정 결정 수락 거부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음에도 그 안을 어느 한 쪽 당사자만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 종료됨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며, 성립된 조정안의 내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2조 9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표 16] 분쟁 조정 결정 연도별 비교



분쟁조정 처리 유형으로는 반려결정, 거부결정, 분쟁조정신청 취하, 조정 전 합의로 인한 조정 절차 종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이 있다. 2013년 10월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35건이며, 연도별로 조정결정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4년에는 17건의 분쟁조정이 있었으며, 그 중 조정성립 및 조정 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이 10건이었고, 2015년에는 19건의 분쟁조정사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 전 합의가 7건, 조정성립이 5건으로 대부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에 비해 조정 전 합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정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바, 조정 절차가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반려 결정을 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이는 시행 초기였던 2014년과 달리 조정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14년에는 없었던 조정 불성립 사례가 2015년에는 3건이나 있었는데, 이는 조정 제도의 성격상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안을 끝까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수락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조정 제도가 갖는 한계라고 할 것이다.

※ 분쟁조정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참고

### 나. 데이터 분야별 조정 현황

[표 17] 2014년 분야별 조정 현황

기간 : '14.01.01 ~ '14.12.31

분야	정보내용	소관부처 및 기관	건수
다수	단순 발간물	한국고용정보원등	4
교육	학력평가자료	서울시교육청	1
	학교 알림 정보(가정통신문, 급식 등)	울산시교육청	1
국토관리	토지 개별공시지가 정보	국토교통부(영광군)	1
	공통주택 공시가격 정보	국토교통부	1
교통물류	도로이정표 정보	국토교통부	1
	자동차 정비이력 정보	국토교통부	1
	주유소 유가정보 Open API	한국석유공사	1
보건의료	건강보험 가입자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약품 특성정보 보험청구 실적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문화관광	미술품 가격정보	국립현대미술관	1
재정금융	주식종가정보	한국거래소	1
과학기술	학술지 참고문헌정보	한국연구재단	1
	논문심사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파일	한국연구재단	1
합계			17

[표 18] 2015년 분야별 조정 현황

기간 : '15.01.01 ~ '15.11.30

분야	정보내용	소관부처 및 기관	건수
다수	단순 발간물	농림부 등	7
국토관리	부동산 경매정보	대법원	2
교육	수능 등 시험문제	교육과정평가원등	3
재난안전	범죄발생위치정보	경찰청	1
	교통사고통계원표	경찰청	1
교통물류	자동차 등록정보	국토교통부	1
	외국인 등록정보	법무부	1
재정금융	면세사업장정보	국세청	1
문화관광	관광정보	서울시	1
농축수산	가축동향자료	통계청	1
합계			19

분쟁조정 사건을 데이터 분야별로 나누어 2014년, 2015년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2014년, 2015년 모두 교통물류 데이터에 관한 조정사건이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교육, 국토관리 분야에 관한 데이터도 꾸준히 조정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거부결정의 비중 가운데 국토관리, 교통물류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간물과 관련된 분쟁조정사건의 경우 거부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2014년에 4건, 2015년에 7건의 조정사건이 처리되었는 바, 저작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상담 사례

- 01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 사례
- 02 분쟁조정절차 관련 상담 사례
- 03 기타 상담 사례

### Ⅲ.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상담 사례

## 01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 사례

**Q** : 공공데이터란?  
1-1

**A**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조(정의)
- ②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데이터베이스(DB)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 ※ 전자화된 파일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 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로 생성· 관리 되는 데이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각 분야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 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Q**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1-2

**A**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re-use)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②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이용자로 이동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조(정의)
- ③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Q 1-3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이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에서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 Q 1-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면책의 가능성이 있는가요?

# A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 면책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데이터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조(기본원칙)

4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6조(면책)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오류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품질 지표로는 완전성(DB구축 및 운영단계에서 논리적/물리적 설계가 적정한지 여부), 일관성(데이터변경 시 정합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정확성(데이터 입력단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값의 상태, 입력방법이나 로직 등이 적정한지 여부), 유효성(저장된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의 범위와 형식으로 저장되는지 여부)이 있음(안행위 심사보고서 참고)

# Q 1-5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하면서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나요?**

# A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 하도록 이용조건을 공표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이용조건은 출처표시, 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조건 부과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용조건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 Q 1-6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 어느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나요?

# A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중앙 부처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보한 후 일괄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근 분쟁조정사건(2014-003) 중에 한 신청인이 중앙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데이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을 이유로 제공거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조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Q 1-7

신청인이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가공·취합 등을 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 A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csv 형태의 파일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OPEN API 형태로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OPEN API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바로 제공거부결정을 하지 말고, 우선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가공되지 않은 raw data라도 원한다고 한다면, raw data로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은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다면 가공 및 취합을 하여 데이터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3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Q 1-8

제공 신청을 받은 데이터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인 경우 제공이 가능한가요?

# A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 신청인이 한 공공기관에 지역별 특정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된 보험청구실적정보를 요청하였는데,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특정 요양기관과 약품, 업체가 드러나게 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과 약품, 업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케 하였습니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Q 1-9

## 저작물 관련 상담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가요?

# A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할 것, ②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할 것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처리 결과물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해당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해당 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처리된 업무처리결과물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②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일 것의 의미는 hwp파일이든, word 파일이든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르는 말인바,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한 공공기관의 발간물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발간물은 공공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제공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데이터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들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조(정의)
- ②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Q 1-10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합저작물이란 단순저작물 수 개를 합한 것으로서 각각의 단순저작물로 분리 가능한 저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기준은 수 명의 저작권자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공동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법 <참고 법령>

- ▶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Q

1-11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제3자의 저작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영리적 이용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저작권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공공기관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권이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바,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출처표시 문제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이 판단하기에 데이터 이용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처리한 분쟁조정사건 중, 보고서의 내용 중 그래프 등이 훼손된 상태로 출판이 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이용조건으로써 출처표시의 내용 및 범위,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하여 제공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출처표시와 관련해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기관명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진의 성명,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제3자의 성명), 기관 홈페이지 URL의 표시 등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출판 전 동일성 유지 등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용조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는 특약으로 양도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저작권 양도 외에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결정을 해줄 때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용조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1-12

기관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발간물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공 가능한 대상인가요?**

#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특정 민간 출판사와 독점 출판계약을 맺어 발간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 출판사의 독점적인 출판과 관련된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은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독점 출판계약을 맺는 것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평등한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반면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민간출판사와 비독점적 출판계약을 맺어 발간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권 문제 등이 없는 한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 1-13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을 해준 이후, 해당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발견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이후 이용자가 이용하던 중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바로 제공중단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제3자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중단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중단결정을 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제공중단 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 및 중단결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 면책 규정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없어 구체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 1-14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이용하여 도서 및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공공기관의 발간물 중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없거나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간물을 이용하여 도서 및 전자책을 제작한 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발간물의 경우 공공데이터이자 저작물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저작권 관계를 사전에 잘 살피어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간물의 경우 텍스트의 저자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폰트 라이선스 문제, 디자인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발간물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한 후, 제3자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만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제3자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제공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3자의 소재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거부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폰트 라이선스 문제라든지 디자인과 같은 부분의 저작권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디자인이 문제되지 않는 원본 파일(가공되지 않은 hwp파일 형태 등)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거나 계약에 따라 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해당 기관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을 (연락처 02-3153-2872~7)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1-15

공공데이터와 공공누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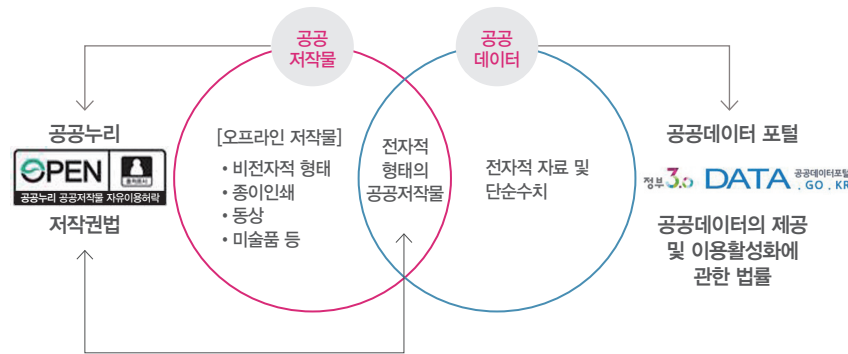
# A: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으로써,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 수행의 결과로써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저작물인 것은 아니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누리란, 법에 정해진 개념이라기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공공저작물에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제도를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누리는 처리 형태가 전자적이든 비전자적이든 상관없이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처리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및 공공누리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02

# Q: 2-1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으로 보아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상담 사례

# A: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한 신청인이 국립미술관에 미술품의 가격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미술관 측에서 작가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아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서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위 법률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분쟁의 성질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Q: 2-2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 중단 결정"에 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에 이용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에 대해서 거부결정을 하거나 제공 중단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03 기타 상담 사례

### Q: 3-1

**공공데이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 A: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공공데이터법이 타법과 비교할 때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3-2

데이터 제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A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야 하는 등 제공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 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2. 수입인자(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Q  
3-3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 결정을 해주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 거부결정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상담 또는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신청인이 서울시 내 25개 구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신청하였는데, 2개의 지자체가 거부결정을 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정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 IV

---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

- 01 조정 성립 사례
- 02 조정 불성립 사례
- 03 조정 거부 사례
- 04 조정 취하 사례
- 05 조정 전 합의 사례
- 06 조정 반려 결정

# 01

## 조정 성립 사례

### IV.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 조정성립이란?

- 1️⃣ 조정부 개최 후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 하면 조정 성립
  -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안을 따라야 함
- 2️⃣ 성립된 조정안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2조(분쟁의 조정)
  - 6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7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8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9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19조(조정 성립)
  - 1 조정은 양 당사자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 및 이 조정수락서를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서를 보내 알려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송달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건번호

2014-014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자동차 리콜 DB, 무상 수리 DB와 함께 활용하여 차종별, 계절 및 월별 통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과잉정비, 정비 불량 방지 및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화 등을 수립할 목적
  - 정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비 책임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예정이므로 정비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정보도 요청함
- 제공 거부 사유
  -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포함한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본인에 한해 차량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자료 관리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협회 또는 공공기관만 수행하고 있어, 그 외의 민간 회사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중요 정보를 공개 및 시스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은 불가함

##### 2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정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비 책임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예정이므로 정비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정보도 요청하였으나 정비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비책임자와 관련된 데이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요청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 주장

자동차 정비이력정보에는 차량 소유자의 신상 및 자동차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 외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자동차관련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도 같은 사유로 제공이 어려움. 다만 개인정보 및 정비사업자 관련 정보를 해당 데이터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함.



### 3 쟁점

#### 가. 피신청인의 자동차 정비 이력 수집·관리 목적 및 근거

-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등 중고차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정비이력 데이터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하여 정비이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4항, 제7항, 제8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

#### 나. 국토부의 정비이력 수집 절차 및 체계

- 수집 및 관리 범위 : 차량의 차대번호,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정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등, 점검·정비내역의 작업내용 등

※ 차량의 차대번호는 차량의 등록번호(차량 번호판의 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차량의 등록 시 또는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사항에 사용되는 식별번호이며, 국토부에서는 차량의 차대번호 별로 정비이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 차대번호는 각 지자체에 차량등록을 받을 때 함께 수집하는 자료이며, 지자체는 국토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

- 각 정비업자들이 정비한 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사항들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 2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자동차 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음

※ 전산정보처리조직은 교통안전공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이력데이터를 전송

- 전송 방식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직접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송하는 방식과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하는 두 가지 방식

#### 다. 국토부의 대상 정보 이용 대민 서비스 현황

- 자동차대국민포털(웹서비스, www.ecar.go.kr), (모바일앱서비스)를 통해서 대상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 중
-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정비이력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조회 가능

- 차량 소유자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는 국토부에서 정비이력데이터의 수집 목적으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2015년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동의 할 경우 타인도 정비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법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 라. 이 사건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아직 평가 결과는 2014년 연말에 나올 예정임

### 4 결과

####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 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 중인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없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 : 차대번호, 차종(차명), 주행거리, 자동차 등록 연월일, 점검·정비 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3에 따른 작업내용 및 별지 제89호 의 2에 기재된 부품 및 공인 정보 관련 데이터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후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이터를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 하기 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한다.

-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제17호에 따라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거부결정을 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관련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동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 가능한 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이 필요함

사건번호

2014-015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① 개요

-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활용
-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②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의 대상 데이터인 발간물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해주면서, 한국고용정보원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왔는데, 이는 공공데이터법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대상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각종 직업정보서 등 연구발간물에 대한 도서 및 전자책 제작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3.0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함.

③ 쟁점

가. 피신청기관의 법적 성격

- 고용노동부의 직속 산하 기관으로써,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나. 이 사건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간물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됨

### 다.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영리적 이용 금지 가능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목적의 영리성’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하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거나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기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 라.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 관계

- 이 사건 발간물은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그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피신청인 소속 책임연구원 \*\*\*의

책임 아래 만화가 \*\*\*, 작가 \*\*\*이 제작하고, 인쇄물 기획·제작 업체인 (주)\*\*\*가 인쇄한 발간물임

- 피신청인 의견 청취 결과 만화가, 작가는 피신청인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제작에 참여한 제3자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주)\*\*\*와 이 사건 발간물 제작 용역 계약(A)을 체결하였고, 만화가와 작가는 (주)\*\*\*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B)이라고 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의 계약서 확인 결과, “이 사건 발간물과 관련하여 (주)\*\*\*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해져 있음
- 이 사건 발간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은 B계약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창작자인 만화가, 작가에게, B계약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실 조사 결과,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주)\*\*\*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제3자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주)\*\*\*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4 결과

### 가. 조정내용

-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주)\*\*\*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주)\*\*\*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주)\*\*\*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

사건번호

2014-01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①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를 구축할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청하는 데이터는 공시되고 있는 자료이며, 더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일부자료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신청한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일부 추가 공시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그 양의 차이가 100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므로, 시장 및 국민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애초에 공시의 목적이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데이터로 제공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 3. 쟁점

#### 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의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공시 목적 및 근거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업무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수행

####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수집 및 공시 절차

- 부동산 가격 공시의 경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내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음.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본번 및 부번, 단지명, 동, 호수까지 입력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는 요구하지 않음

※ 열람한 사항을 출력하는 것은 가능

- DB형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기관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함

#### 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 국토교통부가 정한 2013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 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 국토교통부가 정한 2013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 정한 위 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항목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2014~010 분쟁조정사건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보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어 양 자를 비교 분석함

공시 및 산정 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시 범위	법령상 공시범위 근거 :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근거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실제 공시범위 소재지, 본번 및 부번, 단지명, 동, 호수	토지소재지, 지번
	공용면적 공시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 가격기준년도, 기준일자, 공시일자
활용 현황	공동주택의 국세 및 지방세,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

**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과세지표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도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이 의문을 제기함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세지표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본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공시하는 목적이 과세지표로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격 공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바, 일부 과세지표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로 분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 피신청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방 계획**

-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를 포함하여 20여종의 부동산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에 업무협의 중에 있음
- ※ 공동주택가격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임야)정보, 건물정보 등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 피신청인은 공동주택의 주소 전부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아 주소 중 “호수”의 끝 두 자리를 마스킹 처리함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사건번호

2015-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신흥교역국의 통관 환경 연구 - 대만 등 총 19권의 시리즈(이하 '이 사건 발간물'이라 함)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을 위한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 제공 중단 사유
  - B기관으로부터 "피신청인이 B기관의 국가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출판하게 함으로써 B기관이 B기관의 발간물에 대하여 A출판사와 맺은 독점적 출판계약에 위배될 소지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아 이를 이유로 제공중단결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받아 출판하고 있던 중 제3자인 B기관이 문제 제기를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을 받음. 그런데 피신청인과 B기관 사이에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정당하게 제공 신청을 하여 제공결정 받은 후 이용하고 있던 신청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이 피신청인의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제공 신청에 응하여 제공 결정을 해주었는데, 신청인이 판매 중인 자료를 A출판사에서 발견하고는 B기관의 국가정보자료에 대한 독점 POD계약을 근거로 B기관에 항의를 하였고 B기관도 이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의 작성과정에서 B기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인에게 한 제공결정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공결정을 중단한 것임

3 쟁점

가. 피신청인이 B기관의 국가정보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발간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B기관 자료 취득 경로
  - 피신청인은 B기관의 "국가정보"자료를 취득(이용 및 인용)함에 있어서 B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임의로 이용하였고, 별도로 B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바는 없음
- 이 사건 발간물이 정당한 인용의 범위 내의 이용인지 여부
  - 이 사건 피신청인 발간물 중 피신청인이 인용하였다는 부분과 B기관의 자료를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검토한 결과, B기관의 자료를 이용한 점은 확인되나 B기관의 자료를 복제한 수준은 아니고 발췌·요약하여 이용한 수준이며, 이러한 이용이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

※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 3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나. B기관이 A출판사와 체결한 POD 계약의 성격 및 적용 범위에 따른 A출판사의 계약상 권리 침해 여부

- POD 계약의 성격
  - B기관과 A출판사 간 POD 서비스 제휴협력 계약 사실 확인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배타적 POD 제작 허락 계약임(2014.02.12. 계약기간 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 전)
- 계약의 적용 범위
  - 계약상 B기관의 국가정보 자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함
  - 이 사건 발간물이 B기관의 국가정보 자료를 정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 만든 것이거나, B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면, A출판사의 POD 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출판사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임

※ POD 서비스 계약도 출판계약의 일종인바, 출판권은 복제권, 배포권 중 책을 발간하는 것에만 국한된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는 출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4 결과

#####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의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을 철회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책의 표지에 (예시)와 같은 내용의 출처 및 발간년월을 표시할 것
  - 온라인 판매 페이지 내 책 소개(책 정보)부분에 신청인이 발간한 발간년월일을 기재하는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제로 이 사건 발간물을 발간한 발간년월을 명시할 것

**예시** 「신홍교역국의 통관 환경 연구-콜롬비아」 편의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제로 발간한 발간년월은 2013. 12.인 바, “본 발간물은 2013.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재해줄 것

##### 나. 조정결정 이유

-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 피신청인과 관련 기관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파악 및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을 철회하기로 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및 저작권격권의 보호의 측면에서 출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2014년 이전에 발간되었던 자료인 만큼 신청인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실제 공공데이터의 생성일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실제 발간년월)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함

#### 사건번호

2015-0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수능 및 모의고사 시험문제와 답
- 데이터 신청 목적
  - 수능기출문제 파일을 가공하여 전자책이 서비스를 만들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이 부착되어 있음으로 제공 거부 결정

##### 2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이 사건 공공데이터인 수능문제 등은 이미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어 있어 누구나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PDF파일에 interactive 기능을 부여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프린트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업을 하고자 함

###### 나. 피신청인 주장

- 수능문제 등은 현재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변형금지+상업적 활용 금지)을 부착하여 공개한 것임
-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는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나 그 이전 자료들은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고, 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원저작권자들로부터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공공데이터가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피신청인이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부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문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피신청인 내부에서는 해당 데이터와 관련하여 현재 일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③ 쟁점

가. 수능문제 등이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수능문제 등은 전자화된 파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부의 소관이며, 시험 출제 및 관리 등 시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신청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있음

나.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개 상황

- 수능문제 등은 현재 피신청인 홈페이지 자료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상업적 이용 금지)을 부착한 상태임

※ '공공누리'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이용하기 쉽도록 이용조건을 유형화하여 표시하는 것임. 공공누리는 총 4유형이 있으며,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자유이용대상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변경가능+상업적 이용 가능)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의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

※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

1. 공표된 공공데이터 이용요건 위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다.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저작권 관계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의 출제자와의 저작권 관계
  -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학년도 시험문제부터는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전부 양도받음
  - 따라서 2013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피신청인이 시험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3학년도 이후 시험문제들(2013학년도 포함)에 대한 출제자의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원저작자와의 저작권 관계
  -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용지문의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시험문제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은 수능문제 등을 복제·배포하는 외에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공중송신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신청인의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공데이터 중 2013학년도 이전 자료들은 출제자, 인용 지문의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2013학년도 이후(2013학년도 포함)부터는 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인용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임



**라.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적 형태의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가능

• 공공누리 유형 구분

유형	심벌마크	내용(이용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영리적 이용 불가 (비영리적 이용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 변경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영리적 이용 불가+변경금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하고 있음

※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상 저작물이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권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누구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지자체 등의 저작권산권을 제한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개방 대상에 대해서 부착이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으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의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누리 제1유형, 제3유형밖에 없다고 할 것임

• 결국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2013학년도 이후 자료들(2013학년도 포함)은 다른 저작권 문제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라는 특성상 변형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보다는 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을 금지하는 공공누리 제3유형이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마.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출판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재 여부**

•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수능 기출문제집, 모의평가 기출문제집 등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중이며, 확인 결과 2016년 수능 대비 문제집의 경우 과목별로 2008년도부터 2014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설지와 함께 편집하여 영리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음

• 해당 업체들의 경우 모두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계약 등을 통하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준 사례는 없다고 함.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경고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은 있다고 함

• 피신청인은 일부 출판사들의 상업적 이용, 수험생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한 후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 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4 결과**

**가. 조정내용**

•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재는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어려운 점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의 자료들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학년도 이후 자료들(2013학년도 포함)은 인용지문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함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사건번호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등록 월간자료(이하 '자동차등록정보'라 함)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등록정보(접수데이터를 기준 등록자료) 중 하기 월간자료(2015년 7월~), 제원정보, 제작업체정보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는 마스킹처리
- 데이터 신청 목적
  - 고객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발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와 관련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정보를 이용한 통계 백서 서비스 시범사업(2013.6.~2015.7.31.)을 진행한 사업자로서,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통계분석 처리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기술적 노하우와 시장 수요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인바, 공급자, 소비자, 유관 기관별로 차별화된 정보수요에 맞추어 최적화된 통계 분석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함
- 그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월간 자동차 등록정보 (2015년 7월부터 매월 주기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는 마스킹을 한 상태로 제공받기를 원함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데이터는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통계백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 제공을 검토할 예정임

3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관리 현황

- 조직현황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업무 및 업무 총괄
  - (17개 시·도, 232개 시·군·구)
    - 일선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업무 및 관리사업자 관리 등 총괄 지도·감독
    -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등 전체 자동차관련 민원 업무 처리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 구조변경, 자동차의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제원관리 및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치·운영 권한을 위탁받아 전산 시스템 운영
- 대상 정보 관리 현황(정보처리시스템)
  - 시스템 명칭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운영
  - 시스템 기능 :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의 제작에서 등록, 운행, 말소 까지 전체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
  - 운영 개시일 : 2010년 7월
  - 사용기관 :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나.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교통안전공단 사업의 내용(개요)

- 사업명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계백서 시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
- 사업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사업 기간 및 주관기관 : '13.05 ~ '15.07, 교통안전공단 교통정보처
  - ※ 이 사건 사업에 이용된 데이터는 '15.06.까지의 데이터인데 반해 신청인이 요청한 이 사건 데이터는 '15.07.부터 발생한 데이터이므로 사업 내용과 무관함
- 사업 목적 :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와 관련하여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을 예측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사업에 이용된 데이터 및 이용주기
  - 사업에 이용된 데이터

구분	세부 필요 정보
등록정보	신규등록, 분할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등 등록관련 정보(개인정보 제외)
기타정보	제원정보, 관련 Code 표

- 이용주기 : 전년도 전체 등록정보 1회, 사업 년도 월 단위 등록정보 12회

**다.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여부**

• 교통안전공단의 종료 통보

- 교통안전공단이 2015.7.31.자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음

※ 이 사건 사업은 국토부의 사업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이며, 사업에 활용된 데이터가 국토부의 데이터여서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승인을 해준 바 있음

• 이 사건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

- 이 사건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민간기업인 신청인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4차례의 통계백서 시험판을 제작함

- 긍정적인 측면 :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제공되는 단순 통계정보에 수준 높은 통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이 사건 사업의 한계

• 관련 산업시장 등에서의 통계백서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며, 또한 민간기업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통계정보의 공개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우려 됨

•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데이터의 유출방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민간협력)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민간 주도 사업 지원 방안 검토

• 현재 민간에서는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가공한 통계 서비스(월간통계, 통계보고서 등)를 회원사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이용

• 공단이 직접 통계백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민간 주도의 시장 맞춤형 통계정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

**라. 이 사건의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처리 문제**

• 이 사건 데이터 중 소유자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는 2015년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분류됨

• 따라서 위 정보들은 이 사건 데이터에서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제공하거나(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 마스킹 등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하여야 함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월간 자동차등록자료(신규, 이전, 말소, 저당, 구조변경) 및 제원정보, 제작업체번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위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등 문제되는 부분은 비식별화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연장 사실 및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상대방과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해 피신청인이 거부사유로 들었던 관련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거부사유로써 정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제공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그 외에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제공 시기(월간 발생 데이터이므로 제공 주기 등에 관하여 협의 필요), 제공방법,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사건번호

2015-015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 기출문제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제원산지정보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제1회 ~ 제15회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및 정답 파일(이하 '이 사건 기출문제 등'이라 함)
- 데이터 신청 목적
  - 기출문제집 출간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교육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행정고시학원 소속 직원으로써 피신청인이 출제한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를 교습에 이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기출문제 이용 중단을 요청함
- 그런데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이나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정식으로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제공거부를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나. 피신청인 주장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영리적 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시험문제는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해놓고 있는데,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기출문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제공 거부함

3 쟁점

가.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기관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가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기관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이 사건 데이터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한 것인지 여부
  -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이 부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시험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가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임
  - 또한 피신청인과 같이 관세청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정 신청을 할 때 동 고시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규정에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의 원산지관리사 시험 운영행위는 피신청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행위임
- 즉, 이 사건 기출문제 등은 전자화된 파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다. 이 사건 기출문제 등의 저작권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기출문제의 출제위원 위촉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제3자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문제 출제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출제위원 위촉공문 외에 따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을 따로 양도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출제위원들에게 있음

### 라. 출제위원 등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모든 출제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출제위원들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부동의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 ④ 결과

### 가. 조정내용

- 이 사건 공공데이터인 “제1회 ~ 제15회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및 정답 파일”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다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나, 사실 확인 결과 저작권이 출제위원들(제3자)에게 있고 피신청인이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성, 공익성에 비추어 보건대, 향후에는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확보하거나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사건번호

2015-018



## 서울시 관광정보 콘텐츠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Visit Seoul 웹사이트에 등록된 관광콘텐츠 데이터 (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 ※ 명소, 체험관광, 맛집, 숙박, 축제, 공연, 전시,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한 한국 관광정보의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데이터세트
-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국어 서비스 지도 API 개발에 활용할 목적
- 부분 제공 사유
  - 피신청인은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서 제공하였고 그 외에는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분 제공 결정

### ②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중 관광 정보에 관한 콘텐츠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신청함
- 피신청인은 부분 제공결정을 하면서 신청한 데이터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제공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중 제3자의 권리 등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것임.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보다는 텍스트 파일이 필요하며 피신청인의 제공 거부사유는 납득이 어려움
- 또한 피신청인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부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는 작년에도 같은 사유로 개방을 거부한 적이 있어 신뢰가 가지 않음. 만약 이번에는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과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 주기 바람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미 수차례 피신청인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왔으며,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는 신청인이 이미 제공 받아간 상태임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 그리고 피신청인이 아직 데이터를 전부 개방하지 못한 것은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가 일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 현재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 사진 자료는 2015년 12월에 개방할 예정이고 서울관광명소정보(OPEN API)는 2016년 1월에 개방할 예정임

**㉓ 쟁점**

**가. 공공데이터 부분 제공 결정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또는 “제공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함
- “부분 제공 결정”의 경우 “일부 제공 거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나. 피신청인이 기 제공한 데이터 및 제공 거부한 데이터의 내용**

- 서울시가 기 제공한 데이터 항목 및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음

데이터 항목	내용	제공방법
서울시 다국어지도	행정구역, 지하철역, 주요시설 명칭 등이 포함된 서울시 다국어 지도 일체	서울형 지도 태깅 공유마당 / OPEN API
서울 신규 관광자원 추천코스	서울시 인증 우수관광 상품 코스 개발을 위한 추천코스 사진 및 기본정보	Visit Seou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PDF파일)
서울관광 가이드북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일본어) 서울관광 안내지도, 지하철 노선도, 필수 관광명소 기본정보 및 사진 일체	Visit Seou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PDF파일)
서울시 문화재정보	서울시 지정 문화재 및 표식의 명칭, 한자, 영문, 수량, 규모, 규격, 소재지, 관리청, 지정일 등	열린데이터광장 / Data sheet, OPEN API
한국 관광 정보 (한국관광공사 Tour API)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 가능한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전국 관광지 정보 및 사진 일체	열린데이터광장 / OPEN API

- 서울시가 제공을 거부한 항목은 위 제공 항목 외의 모든 데이터임.

**다. 제공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 피신청인은 기 제공한 데이터 외에는 저작권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신청인은 기 제공한 것 외에 저작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함
-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항목은 어느 정도 특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그 범위가 광범위(2,300여 개 항목, 2만여 건의 DB)하여 일일이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피신청인에게 자료 요청하여 사무국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공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움
- 한편, 2014년 6월 말부터 피신청인은 콘텐츠 활용 동의서 양식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로부터 활용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라.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계획**

- 피신청인은 현재 저작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저작권 등의 제3자 권리문제가 해결된데이터는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함
  - 추가 개방 예정 데이터 : 서울시 관광 필수명소 500개소의 기본정보(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이미지, 텍스트 자료(2016년 1월 개방 예정), 서울시 관광사진(2015년 12월 개방예정)

※ 서울시는 사진작가를 직접 고용하여 홈페이지에 쓰일 사진을 재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제3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확보하여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임

- 서울시 관광 필수 명소 개방 목록은 2009년 이전에 작성된 노후 콘텐츠 중에서 ① 유저가 많이찾는 순, ② 관광 관련 각 부서에서 신규 제작하는 콘텐츠(서울관광 가이드북 등)와 중복 콘텐츠를 제외하고 선정한 것임. 또한 서울시는 기존의 콘텐츠를 현재 제3자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로 새로 제작하고 있는 중이며, 개방 목록은 각 부서 요청 사항 및 서울관광 홈페이지의 개편(2016년 1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함

#### ④ 결과

#####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시 관광 필수명소 500개의 기본정보(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는 2016년 1월에 OPEN API로, 서울시 관광사진은 2015년 12월에 제공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제공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가 광범위하여 제공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공 거부한 데이터 중 서울시 관광 필수명소 500개의 기본정보, 관광사진은 이른 시일 내에 개방 계획이 있어 그에 따라 개방 준비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기로 함

## 02

### 조정 불성립 사례

#### 조정 불성립이란?

- ① 조정부 개최 후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 ②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2조(분쟁의 조정)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20조(조정의 불성립)

- ①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사건번호

2015-002, 009 (병합)



대법원 경매데이터 사건

※ 2015-002, 009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사건 대상 데이터가 동일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세칙 제8조에 따라 병합 처리함

① 개요

- 피신청인 : 대법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2사건]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부동산 경매 중 낙찰데이터의 원시데이터
  - [2015-009사건] : 법원 경매정보 OPEN API
- 데이터 신청 목적
  - [2015-002사건] : 연구에 이용할 목적(비영리적 목적)
  - [2015-009사건] : 모바일 앱 개발에 이용할 목적(영리적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2015-002사건]
    - 원시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추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5-009사건]
    -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현재 OPEN API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데이터에는 경매 신청인, 채무자 등의 인적 사항,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함

②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2015-002사건]
  - 신청인 A는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부동산 경매 중 낙찰데이터의 원시데이터”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법원에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절차 과정에서 데이터의 범위 및 항목을 축소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2013년 서울지역의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낙찰데이터 중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에 관한 정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함

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에 관한 정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함

(데이터 예시)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4.11.13	1,170,000,000	유찰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4.12.18	936,000,000	유찰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5.02.05	748,800,000	매각	943,800,000

• [2015-009사건]

- 신청인 B는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웹페이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모바일 용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해 법원 경매정보를 OPEN API로 데이터 제공 요청
- 또한 신청인 B는 현재 해당 정보의 OPEN API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M/M 정도의 시간과 비용 정도를 투자하면 금방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신청인 B이 재능기부의 형태로라도 OPEN API를 개발하여 이용하길 원한다는 입장임

나. 피신청인 주장

- 법원경매정보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 A가 원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 가공, 변형 등을 하여 제공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 A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대법원이 법원경매정보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추출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공이 불가함
- 현재 신청인 B가 원하는 형태인 OPEN API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위와 같이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피신청인 대법원은 신청인 B의 요청에 따라 법원경매정보를 OPEN API형태로 구축하여 제공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제공이 불가함
- 또한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이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나 OPEN API로 추가 가공해서 신청인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3 쟁점

가. 대법원이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이르는 것인바, 사법부 또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도 공공데이터법에 의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을 해야 하는 기관임

나. 법원경매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인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또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법원경매정보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정도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경매정보에 대하여 사건번호별로 물건번호, 용도, 소재지, 내역, 비교,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담당계, 매각기일, 진행상태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상세정보가 공개되고, 해당 경매의 사건번호를 선택하면 사건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

※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한 경매정보는 인쇄는 가능하나 다운로드 불가

라. 법원경매정보가 개인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위 조문 단서에 의하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결국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제106조에 의하여 공고되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가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마. 피신청인 대법원이 신청인 A(2015-002사건)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제공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 A가 요청하는 대로 데이터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나, 신청인 A가 제한된 범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피신청인인 대법원이 개인정보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임
- 그리고 공공데이터법 제26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규정인 만큼 해당 규정의 제3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전제로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 가공 등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 또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 등 제공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데이터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A가 처음 요구한 데이터에 피신청인 대법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데이터의 제공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이 가능하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한 후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바. 피신청인 대법원이 신청인 B(2015-009)의 요청대로 법원경매정보를 OPEN API로 가공하여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현재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는 열람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고 OPEN API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④-1 [2015-002사건]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데이터를 raw data 형태로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다.
  - 데이터 범위: 2013년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 데이터 중 낙찰된 건에 관한 데이터
  - 데이터 항목: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

(데이터 예시)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4.11.13	1,170,000,000	유찰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4.12.18	936,000,000	유찰	
2014타경9671	1,170,000,000	2015.02.05	748,800,000	매각	943,800,000

**나. 조정결정 이유**

- 법원경매정보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raw data로 제공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조정결정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로서 제공 대상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도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결국 본 조정결정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위 법 제9조 제6항 단서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임

※ 법원경매정보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제106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함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 등 제공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데이터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등이 문제되어 데이터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해 주어야 함

**④-2 [2015-009사건] 결과**

**가. 조정내용**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현재 OPEN API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확인한다.
-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OPEN API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해당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대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OPEN API형태로 법원경매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정보이며, OPEN API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바 향후 피신청인은 법원경매정보를 OPEN API로 구축할 것을 권고함

사건번호

2015-007



경찰청 범죄발생위치 및 시기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경찰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최근 3년간 전국 범죄 유형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등 생활안전지도 분류별) 범죄발생 위치, 시기 정보
- 데이터 신청 목적
  - 여성 등 약자 안심 거리 안내 및 범죄확률지도 서비스 개발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임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최근 3년간의 범죄유형별\* 범죄발생장소 및 시기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함
  - ※ 생활안전지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범죄 유형 분류 :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 피신청인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임
- 또한 해당 데이터의 경우 주거지나 구체적인 장소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 는바, 최대한 주거지 등이 노출되지 않는 도로(길)에서 발생한 범죄데이터만 분석하여 범죄확률지도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다만 생활안전지도와 같은 형태(이미지화된 파일)의 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이므로 가공되지 않은

도로(길)에서 발생한 범죄발생장소의 좌표 데이터가 필요함.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함

나. 피신청인 주장

- 해당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 불가함
  - ※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일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특히 범죄발생위치정보는 범죄 피해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무엇보다피해자의 위치식별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게 됨
  - 또한 범죄발생위치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빈발지역의 경우 우범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집값 하락, 지역의 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 또한 해당 데이터의 경우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한 데이터임

3 쟁점

가. 범죄발생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형사사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이르는 것인바, 범죄발생정보는 형사사법정보이자 공공데이터임

나. 생활안전지도의 범죄확률과 관련된 서비스

- 생활안전지도의 경우 장소별 범죄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집값 하락,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비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하고 있음
-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죄발생 관련 Hotspot 이미지 자료를 제공받아 비주거지역을 기준으로 Clipping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 그래픽 등에서 표시 장치상의 어느 영역만의 그림 또는 도형을 잘라 내는 것. 그 부분만을 표시하고 다른 부분은 표시하지 않음
- ※ 참고로 국민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포털을 통해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미지 자료를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안전지도포털에서 개발자센터에 접속하여 필요한 OPEN API에 대해 승인요청 후 승인을 받아 이용이 가능함

### 다. 범죄발생장소와 관련된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당여부

- 범죄발생장소와 관련된 데이터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며, 형사사법정보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4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제6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둔 이유가 당해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공무수행자에게 제공 또는 다른 사건과의 연계 속에서 재활용되거나 당사자의 인적 특성을 확정하기 위한 프로파일링(profiling)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된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또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법」의 경우보다 벌칙을 가중한 것은 형사사법정보가 일반 행정정보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함

-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 정보임

※ 참고로 경찰청은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관리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raw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으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한 확률밀도함수를 hotspot 이미지자료로 가공한 자료만 제공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여부

- 피신청인 경찰청은 범죄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가 범죄발생장소가 되는데, 만약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피해자에게 2차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켜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출범할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기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주거지역을 제외한 비주거지역에 대 해서만 범죄발생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신청인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같이 비주거지역에 한하여 범죄확률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재산권 침해 등 사인이 입을 피해와 이를 공개하였을 때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교량해볼 때 사인이 입을 피해의 가능성보다 범죄예방효과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여부

- 피신청인 경찰청은 이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신청인이 현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생활안전지도와 같이 비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음

## 4 결과

### 가. 조정내용

- 신청인이 요청한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raw data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확인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대상 데이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제공이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정보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 다만 범죄위치정보의 경우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에 해당하고,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존재하는 정보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범죄위치정보의 개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함

# 03

## 조정 거부 사례

### 조정 거부란?

-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기각 결정과 유사)
- 2 거부사유
  -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사실조사 등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등)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21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1 법령상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등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3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4-017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교육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학급별 알림장 게시판의 비공개 상태를 공개로 전환하고 오픈데이터 양식으로 제작하여 API, RSS 등으로 제공바람
- 데이터 신청 목적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제공 거부 사유
  - 각 급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운영권한 및 보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각 급 학교 학교장에게 있음

#### ②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 피신청인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급 학교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 즉, 신청인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을 함

사건번호

2015-017



### 국세청 서울 시내 면세판매장정보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국세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 시내 3,817개 면세사업장 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
-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가 과세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 ②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 결정(기각결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비밀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정보”로 보고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다수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2.6.선고 2008구합 20925 판결 등), 법제처의 해석례(안건번호09-0365 등)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며, 그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결국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제공이 불가한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종료함



# 04

## 조정 취하 사례

### 조정 취하란?

- ① 신청인이 분쟁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말함
- ② 신청인은 조정결정 전까지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조정 절차 종료 전에 원하는 바를 달성하거나,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언제든지 조정 신청 취하 가능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9조(조정신청의 취하)

- ①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여 음성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2015-011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경찰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
- 데이터 신청 목적
  -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 ②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가 필요(그중 xy좌표 값은 꼭 필요함)한데, 피신청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 시스템을 통해서 사망자 위치정보를 지도상으로 "표시(공개)"만 해주고 있을 뿐 데이터를 "제공"해주지는 않음
- 그리고 피신청인은 자료의 부정확,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됨을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애초에 공개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자료인데 TAAS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함.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됨을 거부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raw data로 제공하면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될 것이 없음

### 나. 피신청인 주장

-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는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사범에 대한 수사 시 실황조사서 작성 등을 위해 활용하는 수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해당 데이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게 되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분리 제공이 어려움
- 신청인이 요구하는 원시데이터가 아닌 통계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음

### ③ 쟁점

#### 가.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교통사고조사관 이 사고조사 종결 후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 자료가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인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로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나. 교통사고 통계원표의 수집 목적 및 수집 절차

- 수집 목적
  -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는 교통안전대책의 효율적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도로교통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자료이며, 통계 목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일 뿐 수사목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움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수사목적으로 작성 및 수집하는 자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서식 21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실황조사서)임

#### • 수집 절차

- 교통조사관은 사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발생일시, 장소, 피해 정도, 사고유형, 사고 개요를 우선 입력하고, 사고 조사 종결 후 3일 이내에 위 항목 외에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함(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교통사고 일일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업무처리, 통계원표 등으로 구성됨

#### 다.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별로 통계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받아 이용 가능함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 기관으로써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배치 받는 형태로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통계데이터를 개방하는 것 외에도 TAAS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치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단, 이는 "공개"수준의 서비스이며 위치정보의 raw data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위치정보(GIS 정보) 데이터는 2015년 12월까지 품질 개선 후 경찰청에서 OPEN API, CSV로 개방하기로 함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2015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교통사고정보 개방체계 구축사업"이 진행 중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사업 완료 후 사망사고의 위치정보를 OPEN API, CSV로 개방할 예정

#### 라.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36조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사고조사목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 등록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없음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 ④ 결과

##### 가. 사건 결과 : 분쟁조정 취하로 사건 종결

##### 나. 분쟁조정 신청 취하의 이유

-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 이후 내부 검토 결과, 68개의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 발생일시, 요일, 발생시군구,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사고유형, 성별, 연령, 당사자종별, 차량용도, 도로종류, 차도 폭, 기상상태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함

※ 좌표정보는 데이터의 오차율이 30% 이상이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바, 피신청인 경찰청은 좌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임(2015년 말 완료 예정)

- 신청인은 좌표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받아도 불필요하게 된다면, 조정 취하 의사를 밝힘

사건번호

2015-014



### 법무부 외국인등록전산정보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법무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명(지번) 단위의 외국인 전산등록 인구수
-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신청 대상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도로명 단위의 인구수 데이터는 운영시스템에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제공거부결정함

#### ② 결과 : 조정신청 취하

-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법무부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법무부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는데,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항목에 관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사건번호 :  
2015-019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정보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통계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주요 축종에 대한 가축 동향 전수조사자료(축종별 사육두수, 농가수), 추정 기법에 따른 동리별 조사방법론에 따른 통계 처리내역
-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거부결정함

#### ② 결과 : 조정신청 취하

-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통계청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통계청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고, 이 후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 하여 사건이 종결됨

## 05

### 조정 전 합의 사례

#### 조정 전 합의란?

- ① 쟁점이 간단하고,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 회의 개최 전에 양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②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절차 종료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2조(분쟁의 조정)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10조(조정 전 합의 권고)

-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의사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 구두 의사표시를 녹취한 음성파일 등으로 한다.

사건번호

2015-003, 004 (병합)



농촌진흥청 발간물 사건

※ 2015-003, 004사건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함

1 개요

- 피신청인 : 국립농업과학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3사건]은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전자파일, [2015-004사건]은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의 전자파일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활용
- 제공 거부 사유
  - [2015-003사건]의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에 대해서는 식품에 사용이 제한된 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2015-004사건]의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대해서는 일부 이미지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유로 각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함

2 쟁점

가. 피신청인의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 2015-003사건(“체질따라 증상따라 한방약술 100선”)
  - 이 사건 데이터에는 식품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한 후 나머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PDF 파일 형태의 데이터에서 해당 정보만을 분리하여 추출하기가 어려운 상황 인바, 해당 발간물 전부에 대해 제공이 불가함
- 2015-004사건(“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지 및 내용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의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 대상으로 보여 짐

3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2015-003사건
  -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간물(「체질따라 증상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가공하기 어려워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2015-004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 텍스트 부분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2015-003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발간물의 내용에 현재 사용이 불가한 독성 약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만 분리하여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분리하여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발간물 전부에 대하여 제공 불가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 2015-004사건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의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사건번호

2015-005, 006 (병합)



농촌진흥청 발간물 사건

※ 2015-005, 006사건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함

1 개요

- 피신청인 : 농촌진흥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5사건]은 「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의 전자파일, [2015-006사건]은 「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의 전자파일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 제공 거부 사유
  - [2015-005]사건의 「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유로 제공거부결정을, [2015-006사건]의 「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에 대해서는 사진 등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공할 수 없고, text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부분제공결정

2 쟁점

가. 피신청인의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 2015-005사건(「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
  - 제출 자료 확인 결과, 해당 자료의 경우 도서형태의 발간물로만 남아있고 전자파일 형태의 발간물은 부존재하여, 데이터 제공이 불가함
- 2015-006사건(「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
  - 피신청인 제출 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사진작가, 집필진(한국관광대학), 출판사(디자인에 참여한 경우)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는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아야 공공데이터로 제공 가능하므로, 허락이 없는한 제공 불가함

3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안 내용

- 2015-005사건
  - 피신청인 농촌진흥청과 공동발행인인 한국생약협회가 이 사건 발간물(「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의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2015-006사건
  - 이 사건 발간물(「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아래의 관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전부확보한 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관련 저작권자 : 외부 집필진(\*\*\*, ###), 사진작가(&&&), 출판사 A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2015-005사건의 경우, 처음에 피신청인이 외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여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자료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동발행인인 한국생약협회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 권고함
- 2015-006사건의 경우, 관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한 후 신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사건번호

2015-008



국립수산물연구원 발간물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립수산물연구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사계절 해물 비빔밥」 외 14종의 발간물 및 「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 「수변정담」, 「어담채보감(2010년)」, 「제2회 어담채 레시피」,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해초류 표본 도록」, 「고래야 고래야」,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 「맛 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생해 쥘니다」,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목적

• 제공 거부 사유

- 16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편집저작물에 관한 이미지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 거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모든 건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제공 신청을 한 공공데이터 대부분에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 등의 이미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제공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하게 된 것임

3 쟁점

가. E-BOOK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던 발간물의 경우

• 발간물 목록 : 「수변정담」, 「어담채보감(2010년)」, 「제2회 어담채 레시피」, 「사계절 해물 비빔밥」, 「맛 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생해 쥘니다」

• E-BOOK 서비스의 경우 신청인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는 현재 생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파일로 가공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E-BOOK 서비스로만 제공되고 있던 발간물은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 불가함

※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나. pdf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던 발간물의 경우

• 발간물 목록 :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해초류 표본 도록」,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 위 발간물 중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는 어문저작물로, 「해초류 표본 도록」,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은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바,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유이용이 불가한 공공저작물임

- 다만, 편집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사진, 텍스트 등 소재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해초류 표본 도록」

- 사진 및 텍스트를 작성한 것이 피신청인 내부 연구진인 \*\*\* 연구사이기는 하나, 확인 결과 사진은 연구사로 업무 수행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이며, 텍스트 부분도 개인적으로 교수 시절 논문으로 작성하였던 것들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진 및 텍스트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 연구사의 정당한 이용 허락 없이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어문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저작권법 제24조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사진에 대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전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자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임



-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 어보」
  - 별도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텍스트, 사진에 대하여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제공 가능함
-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 발간물 전체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진,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3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갑, 을, 병)로부터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을 전부 양도받은바, 사진, 텍스트 부분은 공공데이터로 제공 가능한 대상임

**다. 「고래야! 고래야!」**

- 저작자 대한민국(관리부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유이용이 불가한 공공저작물임
-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자유이용 승인이 있는 경우 자유이용이 가능함.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기 전에 이용방법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승인하여 해당 발간물은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가능함
- 다만, 해당 발간물 중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사진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의 저작자로부터 피신청인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만 확보한 후 해당 발간물을 제작함. 따라서 해당 발간물 중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은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로써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불가함

**라. 「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 피신청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이용도 중지한 상태인바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불가함

**마. 위 발간물 외 나머지 발간물의 경우**

- 발간물 목록 :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1999),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2004), 「속담 속 바다이야기」(2007),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2007),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2005)
- 발간년도가 오래되어 피신청인이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 제공이 불가함

**4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피신청인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단, 신청인은 해당 발간물을 이용하기 전에 피신청인과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 가능한 데이터 내용 및 제공 가능 범위
    - 전부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 부분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 사진만 이용 가능, 「고래야! 고래야!」 -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 외에 이용 가능
- 이 사건 발간물 중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은 현재 피신청인이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이 사건 발간물 중 「수변정담」, 「어둠채보감(2010년)」, 「제2회 어둠채 레시피」, 「맛 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사계절 해물 비빔밥」은 제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자료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서,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 중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고, 전자파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 및 범위는 합의 권고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음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이용방법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와 같이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함

#### 사건번호

2015-013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 사건

##### ① 개요

- 피신청인 : 도로교통공단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700문항(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
- 데이터 신청 목적
  -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해당 시험문제에 대해 특정 출판사들과 독점적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출판사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 결정

##### ② 쟁점

####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저작권 관계의 확인을 요청한 결과 피신청인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임이 확인 됨
- 따라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대상이며 공공데이터로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에 해당함

#### 나.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한 출판계약의 문제

- 피신청인의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하여 일부 출판사들과 독점적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제공이 어렵다고 하나, 독점적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출판사들이 보호받는 권리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데에 대해서만 미치며, 모바일로 해당 데이터를 공중 송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권리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점적 출판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과 같은 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제공 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짐

③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피신청인은 양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 의사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데이터의 원본 파일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검토 완료 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즉시 신청인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을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제공 거부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영리적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영리적 이용에 대한 승인은 올해 10월 중순경까지 검토를 끝낸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상호 합의함

사건번호

2015-0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① 개요

- 피신청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디자인백서
-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
- 제공 중단 사유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 제공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알게 되어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 함

②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이 사건 발간물(2012-2013 디자인백서)에 대해서 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데이터의 이용을 중단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아닌 외부집필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저작권을 피신청인과 외부집필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权人외부 집필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외부 집필진들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집필진 전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동의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함

# 06

## 조정 반려 결정

### 반려 결정이란?

- 1 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결정을 말함(각하결정과 유사)
- 2 반려사유
  - 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 1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2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015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

인쇄일 | 2015년 12월

발행일 | 2015년 12월

---

발행처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기획편집 | 수석연구원, 사무국장 최문실(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정현철(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변호사 김다희(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류진주(한국정보화진흥원)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화 | 02-6191-2064

---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02-333-6555)

---

※ 본서의 저작권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와 컬러커뮤니케이션즈에게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http://www.odmc.or.kr))에서 본서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